2005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5년 6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예산

가. 200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05월 16일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5년 05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12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01) : 상정,개요설명,소관별 심사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02) : 소관별 심사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03) : 계수조정, 심사보고서채택

3.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가. 제안이유

○ 당초예산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에 따른 자체사업, 조직개편에 따른 기준경비 및 필수경상경비, 최소한의 자체사업 등의 반영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200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85,378백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5,05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416백만원이 증액된 161,071백만원, 특별회계는 1,634백만원이 증액된 24,307백만원임.

○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지방세 △1백만원, 세외수입 1,010백만원, 지방교부세 7,806백만원, 국·도비보조금 4,60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234백만원, 국·도비보조금 400백만원임.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경상예산 1,994백만원, 사업예산 13,407백만원, 예비비등 기타 △1,985백만원이며,특별회계는 사업예산 1,634백만원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함경호]

○ **200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853억 7,823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703억 2,869만원대비 150억 4,953만원이 증액된 것임.**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134억 1,592만원

- 특별회계는 16억 3,361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전체회계별 예산규모면에서는

- 일반회계가 86.9%,

- 특별회계는 13.1%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55억 6,100만원이며

- 일반회계가 48억 3,200만원이고

- 특별회계가 5개회계에 7억 2,900만원임.

-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31억8,700만원대비 31.6%가 감소한 10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가. 一般會計 豫算

1) 歲入

○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1,610억 7,100만원으로 당초대비 9.1%인 134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음

- 이중 자체수입이 10 억 900만원이고
- 의존수입이 124 억 700 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 이중 자체수입율은 17.7%를 차지하고 있음.
- 세입구조면으로는
  · 자체수입은 순세계잉여금(3.4%)과 잡수입(0.2%)으로
  ·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58.7%)와 국.도비보조금(21.7%)으로 편성되어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은 것이 특징임
  · 특히 자체수입 중 보통세가 소폭이나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세목별로 보면

① 지방세수입

-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주행세)는 당초대비 100만원이 감소하였고
- 이는 보통세의 농업소득세가 당초계획을 향후 5년간 유보하므로 전액 감소된 것이며
- 목적세와 과년도수입은 변동이 없음.
- 아울러 지역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세체납액(2005. 4월말 현재 35억 1,900만원)등에 대한 차질없는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② 세외수입

- 세외수입의 총규모는 131억 1,300만원으로 8.3%인 10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변동이 없으나
  ·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9억 8,000만원과 서울사무소임대료 반환금인 잡수입 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세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③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 당초예산 868억 1,200만원보다 9%인 78억 600만원이 증가한 946억 1,800만원으로 평창군 세입의 58.7%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증가내용으로는『보통교부세 추가 확정분 64억 8,500만원, 장평 관문정비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 오폐라학교 정비사업비 3억원 등』이 추가 교부되어 예산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 되었음.
- 특히, 지방교부세는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력 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재원인 만큼
  · 사업별 부담금 확보와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됨.

④ 재정보전금

-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시·군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시·군에서 징수하는 시·도세의 27%를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대비시 변동 없음.

⑤ 보조금

-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총규모는 252억 3,600만원으로 당초 대비 15.9%인 34억 5,500만원이 증가 하였고
  · 이중 국고보조금에서 14억 1,200만원이 증가하고
  · 국가균형특별회계는 19억 4,900만원이 증가하고
  · 기금은 9,400만원이 증가 되었음
- 시·도비보조금은 총 96억 6,500만원으로 당초대비 13.4%인 11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주요 증가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히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중요한 중앙과 도의 지원 재원으로
  · 우리군의 전체 세입에 21.7%를 점하고 있어
  · 앞으로 집행기관의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사업구상과 예산 확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됨.

2) 歲出豫算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610억 7,122만원으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당초대비 9.1%인 13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음.

- 분야별로는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4.6%, 사업예산의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15%, 자체사업이 18.1%고, 채무상환은 없으며, 예비비는 당초대비 21억 7,800만원이 감소한 10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이번 세출예산의 특징으로는 세출예산의 64%인 1,025억 2,900만원이 사업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사업으로는

- 개촉지구 도로개설 등에 27억원
- 농·축산 및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24억원
- 관광·문화·체육진흥분야에 20억원
- 아름다운 강원가꾸기 및 도시개발분야에 20억원
- 지역경제 및 동계올림픽·국제대회개최등에 5억원 등
- 기타 기초생활수급보장 수급자를 위한 사회보장비, 기초행정수행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사업등임
- 또한 예비비가 당초대비 17.6%가 감소되어 일반회계 총액의 1.0%이상 계상기준액에 못미치는 것은
  · 국도비보조금과 수해복구비 등의 부담금에 과다 충당되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① 기능별 현황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경제개발비(33.6%)와 사회개발비(41.0%)가 전체 예산의 7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먼저 일반행정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및 기기 구입비 7,300만원, 민원실 정비 3,500만원, 건강보험 등 부담금 부족분 1억 6,600만원, 계방산 정보화마을 주차장 조성사업6,300만원, 청사2·3층 환경정비 5억원, 군유재산 대체취득 8,700만원, 2014 동계올림픽유치 해외홍보 및 민간행사 위탁지원금 2억 8,000만원등의 증액 되었음

- **사회개발비에 있어서는**

· 경로당 신축 12억원, 주민건강관리실 신축에 8억 1,800만원 생계급여가 4억원, 오페라문화학교 조성이 3억원 월정사 대법륜전 단청사업 4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 6,000만원 등이고

- **경제개발비는**

· 면화지구 밭기반정비에 3억3,800만원, 개촉지구 도로사업에 43억9,200만원, 소교량 가설 10억5,8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4억 8,000만원, 시설원예경영체 안정화사업에 2억 1,0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고

-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에서 21억 7,800만원을 감액하여**

· 수질개설 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6,000만원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서는 6,800만원이 국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 부담금 15억 1,000만원, 올림픽 관련 사업 3억등에 감액된 예산이 편성 되었음.

이상과 같이 각 기능별로 세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감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살펴 보았음

다.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

○ 특별회계는 총 16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휘닉스파크 배수지 편입토지매입비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 기타특별회계는 총 14억 4,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흙탕물 저감사업비 등에 증액 되었고, 기타는 운영비가 증액 되었음

○ 예산은 군민의 혈세로 군정발전의 근간이 되도록 투명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전제로 주민편의 위주로 적시적소에 집행 운영하여 군의 균형발전에 기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당초에 계획한 사업의 변경과 시기적으로 불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심층분석하여 최소한 제1회추경에서 재구상 반영되도록 하여 공기부족과 미결사업으로 이월폐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부서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 앞으로 예산부서는 예산편성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층분석하여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합니다.

① 조직정비에 따른 정수물품구입은

- **지방재정법 제113조** 및 동법 **제112조**의 규정과 **평창군 물품관리 조례** 제9조, 에 의거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② 예비비의 예산 감액 편성

- 예비비는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할시 예산충족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소한 당초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상을 책정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 훈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과 기준액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③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교시설 지원사업이 연간 연간지원 총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평창군 재정운영에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 지역별 학교별 지원에 형평성 논쟁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④ 과목 경정 부족예산 편성에 따른 과다 경정 발생

- 예산편성시 예산실무자의 과목착오로 추경에서 경정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업무 연찬과 각부서의 회계담당에 대한 직무연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합적 예산 및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사업계획서 중 6월에 예산이 상정됨에도 사업기간의 종료가 5월로 되어 있는 등 예산편성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므로 각별한 실무자의 주의가 필요함
- 아울러 이번 추경심사에서는 우리군이 당면해 있는 각종 사업들의 완벽한 마무리와 2014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대비 및 기반시설조성,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등이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 행정의 누수로 인한 우리군의 잠재적 폐해가 없는지에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상가 DB 구축과 관련 향후 관리 대책은 ?	○ 군에서 관리하다가 상가번영회의 기반이 정착되면 상가번영회로 관리를 이관할 계획임.
○ 조직개편 사무기기구입비는 ?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기기구입비가 아닌 기획실, 지역도시과, 자치행정과 직원들의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임
○ 음식경연대회는 ?	○ 평창군 대표음식 발굴을 위한 것임
○ 사회단체 합동연수는 ?	○ 각 사회단체 회원들의 활동과 의무의 봉사이념정립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합동연수 실시로 2014동계올림픽 관련 봉사 정신교육을 시키려는 것임.
○ 대화고교 생활관 및 급식소 신축과 관련 군비지원이 안되었을 경우 문제점은 ?	○ 면적이 축소될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전통향토민속 육성이란 ?	○ 읍면당 1개씩 전통민속을 발굴하려는 것임
○ 종합운동장 CC-TV는 왜 설치하는가 ?	○ 앰프가 1층에 있고 행사는 2층에서 진행하는 것과 관련 무전기로 각종 행사진행을 하다보니 행사진행에 차질을 빚어 행사진행 원활를 위해 2층에 설치함.
○ 동강생태계 보전지역 주변마을 컨설팅 지원은 ?	○ 동강에 접해있는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집수리사업 수혜자 선정은 ?	○ 자가나 군유가옥 임대가구에 대해 직접 보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대화주민건강관리실 관리운영 계획은 ?	○ 대화번영회와 주민협의체에 협의 운영 할 계획임.
○ 신설과에 대한 경상경비 계상 기준은 ?	○ 인원수와 업무량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음
○ 백합종구 지원사업과 관련 과목경정 사유는 ?	○ 백합종구 지원업무를 당초 농정과에서 관장하다 3월 업무조정으로 기술개발과로 이관되어 과목경정한 사항임.

6. 토 론 요 지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없　　음》

8. 심 사 결 과

가. 일반회계 : 수정가결

나. 특별회계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붙　임 : 200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의결조서 1부. 끝.

세 입·세 출 예 산 총 괄 표

【 경제성질별 】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액	구성비율%	기정예산액	구성비율%	증△감	예산액	구성비율%	기정예산액	구성비율%	증△감	예산액	구성비율%	기정예산액	구성비율%	증△감
세입	계	185,378,234	100	170,328,699	100	15,049,535	161,071,226	100	147,655,304	100	13,415,922	24,307,008	100	22,673,395	100	1,633,613
	지방세수입	15,438,820	8	15,439,860	9	△1,040	15,438,820	10	15,439,860	10	△1,040		0		0	0
	세외수입	28,525,844	15	26,282,231	15	2,243,613	13,113,234	8	12,103,234	8	1,010,000	15,412,610	63	14,178,997	63	1,233,613
	경상적세외수입	9,502,890	5	9,502,890	6	0	5,585,397	3	5,585,397	4	0	3,917,493	16	3,917,493	17	0
	임시적세외수입	19,022,954	10	16,779,341	10	2,243,613	7,527,837	5	6,517,837	4	1,010,000	11,495,117	47	10,261,504	45	1,233,613
	지방교부세	94,617,668	51	86,812,000	51	7,805,668	94,617,668	59	86,812,000	59	7,805,668		0		0	0
	지방양여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재정보전금	3,000,000	2	3,000,000	19	0	3,000,000	2	3,000,000	19	0		0		0	0
	보조금	43,795,902	24	38,794,608	23	5,001,294	34,901,504	22	30,300,210	21	4,601,294	8,894,398	37	8,494,398	37	400,000
	국고보조금	34,118,129	18	30,262,662	18	3,855,467	25,236,181	16	21,780,714	15	3,455,467	8,881,948	37	8,481,948	37	400,000
	도비보조금	9,677,773	5	8,531,946	5	1,145,827	9,665,323	6	8,519,496	6	1,145,827	12,450	0	12,45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0		0		0	0
세출	계	185,378,234	100	170,328,699	100	15,049,535	161,071,226	100	147,655,304	100	13,415,922	24,307,008	100	22,673,395	100	1,633,613
	인건비	27,339,683	15	26,917,186	16	422,497	24,805,781	15	24,383,284	17	422,497	2,533,902	10	2,533,902	11	0
	물건비	16,019,234	9	15,531,738	9	487,496	14,062,858	9	13,605,362	9	457,496	1,956,376	8	1,926,376	8	30,000
	이전경비	25,562,246	14	22,770,322	13	2,791,924	24,400,823	15	21,608,899	15	2,791,924	1,161,423	5	1,161,423	5	0
	자본지출	108,647,934	59	96,166,185	56	12,481,749	93,178,244	58	81,516,615	55	11,661,629	15,469,690	64	14,649,570	65	820,120
	융자및출자	1,232,001	1	448,608	0	783,393	0	0	0	0	0	1,232,001	5	448,608	2	783,393
	보전재원	2,384,626	1	2,384,626	1	0	431,410	0	431,410	0	0	1,953,216	8	1,953,216	9	0
	내부거래	3,182,766	2	2,922,726	2	260,040	3,182,766	2	2,922,726	2	260,040		0		0	0
	예비비및기타	1,009,744	3	3,187,308	2	△2,177,564	1,009,344	1	3,187,008	2	△2,177,664	400	0	300	0	100

세 입·세 출 예 산 총 괄 표

【 세 세 항 별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예 산 액	구성비율 %	기 정 예 산 액	구성비율 %	증△감	예 산 액	구성비율 %	기 정 예 산 액	구성비율 %	증△감	예 산 액	구성비율 %	기 정 예 산 액	구성비율 %	증△감
계	185,373,234	100	170,328,699	100	15,049,535	161,071,226	100	147,655,304	100	13,415,922	24,307,008	100	22,673,395	100	1,633,613
경 상 예 산	48,732,337	26	46,737,944	27	1,994,393	45,601,289	28	43,606,896	30	1.994,393	3,131,048	13	3,131,048	14	0
인 건 비	27,339,683	15	26,917,186	16	422,497	24,805,781	15	24,383,284	17	422,497	2,533,902	10	2,533,902	11	0
경 상 적 경 비	21,392,654	12	19,820,758	16	1,571,896	20,795,508	13	19,223,612	13	1,571,896	597,146	2	597,146	3	0
사 업 예 산	120,948,469	65	105,907,780	62	15,040,689	102,528,664	64	89,121,488	60	13,407,176	18,419,805	76	16,786,292	74	1,633,513
보 조 사 업.	70,167,898	38	63,009,306	37	7,158,592	58,153,854	36	51,536,262	35	6,617,592	12,014,044	49	11,473,044	51	541,000
자 체 사 업	50,780,571	27	42,898,474	25	7,882,097	44,374,810	28	37,585,226	25	6,789,584	6,405,761	26	5,313,248	23	1,092,513
채 무 상 환	6,398,024	3	6,398,024	4	0	3,642,269	2	3,642,269	2	0	2,755,755	11	2,755,755	12	0
지방채상환	3,245,723	2	3,245,723	2	0	489,968	0	489,968	0	0	2,755,755	11	2,755,755	12	0
채무부담행위상환	3,152,301	2	3,152,301	2	0	3,152,301	2	3,152,301	2	0	0	0	0	0	0
예 비 비 등	9,299,404	5	11,284,951	7	△1,985,547	9,299,004	6	11,284,651	8	△1,985,647	400	0	300	0	100
예 비 비	1,009,344	1	3,187,008	2	△2,177,664	1,009,344	1	3,187,008	2	△2,177,664		0		0	0
기 타	8,290,060	4	8,097,943	5	192,117	8,289,660	5	8,097,643	5	192,017	400	0	300	0	100

예 산 총 규 모

2005년 【1회추경】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 감
총 계	185,378,234	170,328,699	15,049,535
일 반 회 계	161,071,226	147,655,304	13,415,922
특 별 회 계	24,307,008	22,673,395	1,633,613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201,818	9,011,738	190,080
기타특별회계	15,105,190	13,661,657	1,443,533
주택사업특별회계	1,027,562	1,027,562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9,317	40,130	49,187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59,500	359,500	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178,534	444,228	734,306
수질개선특별회계	12,450,277	11,790,237	660,040

2005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수 정 의 결 조 서

1. 예산총칙 수정

○ 제1조

(단위 천원)

회 계 명	지방자치단체제출 예 산 액	수정예산액	증 감
계	185,378,234	185,378,234	0
일반회계	161,071,226	161,071,226	0
특별회계	24,307,008	24,307,008	0

○ 제2조 : 세입 · 세출 명세는 별첨"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 변동사항 없음
○ 제4조 : 변동사항 없음
○ 제5조 : 변동사항 없음
○ 제6조 : 변동사항 없음
○ 제7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2,408,094천원)**으로 한다

2. 예산 수정의결 내역

가. 세입총괄

(단위 천원)

회계별	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	수 정		수정예산액	비 고
		감 액	증 액		
계	185,378,234	1,398,750	1,398,750	185,378,234	
일반회계	161,071,226	1,398,750	1,398,750	161,071,226	
특별회계	24,307,008	0	0	24,307,008	

○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천원)

과목			지방자치단체제출 예산액	수정		수정 예산액	수정사유 및 내역
관	항	세항		감액	증액		
계			161,071,226	0	0	161,071,226	
100 지방세수입			15,438,820	0	0	15,438,820	
200 세외수입			13,113,234	0	0	13,113,234	
300 지방교부세			94,617,668	0	0	94,617,668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00.000	0	0	3,000,000	
500 보조금			34,901,504	0	0	34,901,504	

나. 세출총괄

(단위 천원)

회계별	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	수정		수정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계	185,378,234	1,398,750	1,398,750	185,378,234	
일반회계	161,071,226	1,398,750	1,398,750	161,071,226	
특별회계	24,307,008	0	0	24,307,008	

○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천원)

과목			지방자치단체제출 예산액	수정		수정 예산액	수정사유 및 내역
관	항	세항		감액	증액		
계			161,071,226	1,398,750	1,398,750	161,071,226	
1000 일반행정비			39,267,269	1,061,600	0	38,205,669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및 기기구입 △73,000천원 · 평창대표음식발굴 시상금 △3,400천원 · 요리경연대회 행사지원 △21,600천원 · 평창군이장협의회운영 △3,600천원 · 관내 사회단체 합동 연수 △10,000천원 · 대화고등학교 생활관 및급식소신축 △250,000천원 · 청사2.3층 환경정비 △500,000천원 · 청사2 · 3층 환경정비 에따른 집기구입 △200,000천원
2000 사회개발비			66,089,620	284,000	00	65,805,620	· 주민건강관리실 신축 △280,000천원 · 주민건강관리실 신축 감리비 △4,000천원
3000 경제개발비			54,047,021	53,150	0	53,993,871	· 소하천포락 개인 사유지 보상비 △50,000천원 · 친환경종이멀칭 벼이앙시범사업 △3,150천원
4000 민방위비			168,004	0	0	168,004	
5000 지원및기타 경비			1,499,312	0	1,398,750	2,898,062	· 예비비 1,398 .750
	5400 예비비		1,009,344	0	1,398,750	2,408,094	

2005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161

제출년월일 : 2005. 5.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 안 이 유

당초예산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에 따른 자체사업, 조직개편에 따른 기준경비 및 필수경상경비, 최소한의 자체사업 등의 반영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200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85,378백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5,05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416백만원이 증액된 161,071백만원, 특별회계는 1,634백만원이 증액된 24,307백만원 임.

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지방세 △1백만원, 세외수입 1,010백만원, 지방교부세 7,806백만원, 국·도비보조금 4,60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234백만원, 국·도비보조금 400백만원임.

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경상예산 1,994백만원, 사업예산 13,407백만원, 예비비등 기타 △1,985백만원이며,특별회계는 사업예산 1,634백만원임.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